

변화하고 있는 우리의 법률시장

소순무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07년 4월 1일 체결된 한미 FTA 협약으로 법률시장의 개방 또한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협정 발효 후 5년 내에는 완전 개방이 이루어져 미국 로펌과 국내 로펌 간 동업사업체 설립이 허용된 상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로스쿨법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로스쿨법의 시행을 앞두고 우리 법률시장의 현황 및 특징을 알아보고, 법률시장개방에 따른 대응책을 검토해 봄으로써 로스쿨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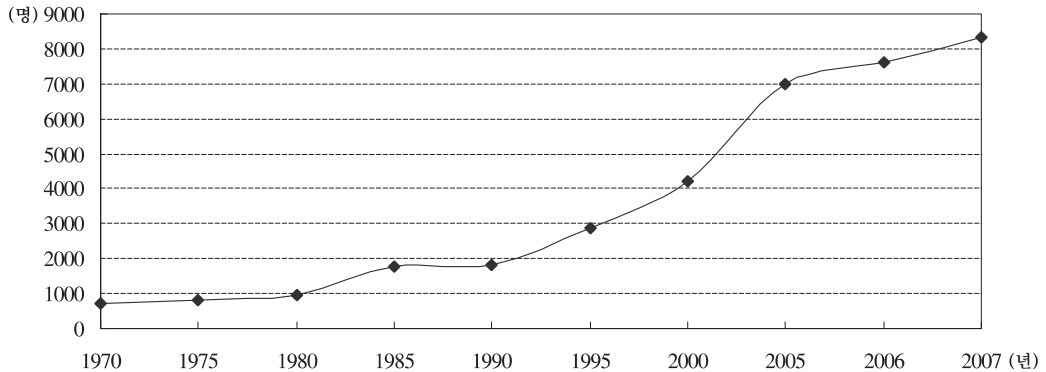
I. 서론

2007. 7. 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법’이라 한다)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와 관련하여 로스쿨법만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정작 핵심 요소인 변호사시험, 사법연수원 존폐 등을 규정한 사법시험법 및 법원조직법 등은 그 개정 또는 폐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나, 어쨌든 이로써 로스쿨 도입에 대한 지난 10년 간의 갑론을박이 결론을 맺고 대한민국 법조인양성시스템의 일대 대변혁이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98년 출범한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필두로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수년 간 논의하며 사법개혁의 첫 번째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로스쿨 도입의 가장 큰 배경은 무엇일까? 바로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접근의 용이’와 ‘변화하는 법률시장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법조인양산’이라는 모토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토의 기반에는 더 이상 법조가 고압적이고 불가침한 영역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이라는 법률시장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지난 4월 2일에는 한·미 FTA가 체결되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우리 법률시장의 대외개방을 불러올 것이며, 곧이어 한·중, 한·EU 간의 FTA 역시 교섭을 마무리짓고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2007년 우리 법률시장은 변화의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이렇듯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우리 법률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맞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II. 우리 법률시장의 현황 및 특징

1. 법조인 수의 증가

1990년대 후반에 들어 나타난 법조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법조인 수의 급격한 증가일 것이다. 199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법조인의 수는 [그림 1]과 같이 1999년 이후 연 800~1,000명 이상의 사법시험합격자를 배출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이는 대한민국에 첫 변호사가 배출된 1906년부터 1985년까지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불과 한두 자릿수에 그친 때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밖에서는 여전히 법조인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로스쿨법 통과와 기저에는 이와 같은 법조인 증가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로스쿨이 도입되어 배출되게 될 법조인의 수는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안타깝게도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로스쿨법은 법 명칭 그대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술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정작 중요한 변호사시험, 변호사연수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3년에 걸친 사법개혁의 중심축이었던 로스쿨법만 국회를 통과하면 전혀 새로운 형태의 법조인이 법 시행 즉시 양산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국민들로서는 상당 기간 그 기대를 뒤로 미룰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관련법인 사법시험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등의 개정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로스쿨 도입 이후 법조인의 수는 대폭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명제인데, 법조인 배출 수의 기반이 될 로스쿨 입학정원이 대학 간의 이해득실이나 정치적 고려에 따라 결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림 1] 변호사 수 증가추이표 (대한변호사협회 자료)

2. 소액사건의 증가

1995년 이후 변화된 법률시장의 또 다른 특징으로 소액사건과 이른바 나홀로소송인 본인소송의 증가를 들 수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2005년에는 소송물 가액 2,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이 전

〈표 1〉 제1심 민사본안사건 소송물가액별 년별비교표 (대법원 자료)

	1,000만원 까지	2,000만원 까지	3,000만원 까지	5,000만원 까지	1억원 까지	5억원 까지	10억원 까지	10억원 초과	비재산권 상청구	합계
1996	391,918	71,226	37,945	26,001	17,743	15,619	1,385	718	1,185	563,740
1997	445,432	84,142	38,741	32,242	22,411	19,598	1,807	1,085	813	646,271
1998	540,362	196,788	63,906	43,311	49,448	17,502	1,985	1,215	931	915,448
1999	489,812	178,855	69,543	44,144	33,168	21,806	2,273	2,005	1,171	842,777
2000	412,951	156,914	58,943	44,322	31,090	20,528	2,429	1,849	717	729,743
2001	538,754	140,264	55,141	41,586	31,791	24,888	3,127	2,374	548	838,473
2002	675,034	169,055	61,681	43,338	31,532	28,184	3,779	2,741	550	1,015,894
2003	757,052	198,398	68,496	47,871	38,285	33,026	4,256	3,062	626	1,151,072
2004	777,695	211,028	71,033	49,248	37,976	35,102	4,430	3,264	455	1,190,231
2005	747,908	168,980	68,751	50,910	40,936	35,987	4,492	3,219	706	1,121,889

체 제1심 민사 본안사건의 81.7%를 차지한다. 이러한 소액사건은 임대차,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등 비교적 사안이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일반인도 인터넷 등을 통해 사건진행방식을 쉽게 체득할 수 있으며, 무료법률상담, 소장 등 주요 서면만을 법무사가 작성해 주는 방안을 통하여 본인소송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된 까닭이다. 이를 토대로 일부 교수들은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의 수를 늘려 소액사건의 변호사 선임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은 점을 간과한 발상이다. 변호사 강제주의가 도입되지 않는 한 단순히 변호사 수임료만 낮아진다고 하여 위와 같이 충분히 본인소송 수행이 가능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변호사 수임료가 높아진다고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법조 인접지역의 활성화

우리 법률시장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표 2〉와 같이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손해사정사, 변리사 등 법조 인접지역 종사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그 수가 25만이나 되는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 경매 대리 등 일정한 법률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 법률시장의 가장 큰 법률서비스 공급자인 셈이다. 결국 그동안 끊임없이 변호사 수의 증가를 주장하던 측에서는 이렇듯 대한민국 법률시장의 또 다른 축인 법조 유사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이 아직 미흡했

〈표 2〉 법조 인접지역 종사자 현황

(단위: 명)

변리사	관세사	세무사	법무사	손해사정사	공인노무사	합계
1,981	1,081	7,521	5,525	4,608	1,825	22,541

※ 2006. 4. 30. 기준

※ 조사처 : 특허청, 한국관세사회, 한국세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건설교통부

던 것으로 생각된다. 로스쿨 개원 후 변호사가 증가된다면 시장경쟁의 원리상 법조 유사직역이 담당하던 법률업무가 일정 부분 변호사에게 이동되게 될 것은 자명하며, 그렇다면 이는 어쩔 수 없이 법조 유사직역 시장의 변화 역시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4. 법조계 직역의 다양화

기존의 법조인이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전통적인 송무업무에 의존한 데 비하여, 2000년 이후에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국내정서상 외부 기관의 인재활용시스템이 충분하지 않고, 변호사 역시 장래에 대한 불안감, 처우 등의 불만으로 조직 내 입지가 완전히 정착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 기업과 공공기관은 변호사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충하고, 변호사는 조직 내에서 실력 발휘의 길을 모색한다면 서로 상생하는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향후 변호사 숫자가 대량으로 증가 되겠지만, 종래와 같이 전통적인 송무사건을 취급하는 변호사는 불과 몇 분의 1 정도로 감소될 것이고, 공공기관 및 기업 내에서 법률사무를 다루는 변호사자격자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 내 법률사무 종사자 중 변호사자격자는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인력운용의 효율이나 전문화 요구 정도에 따라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비자격 법률실무자의 역할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로스쿨이 되지 못하고 학부로서 존속하는 법학과 졸업자들의 역할과 진로에 대하여도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마땅하다. 사법서비스는 변호사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져야 할 필연적인 이유도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로스쿨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5. 로펌의 대형화 및 전문화

19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대한민국 법조시장의 큰 지각변동으로 로펌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들 수 있다. 2007년 8월 현재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수는 4,114인으

〈표 3〉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국내기업 취업현황 (사법연수원 자료)

(단위: 명)

연도	사법연수원 수료인원	국내기업 취업연수생 인원
1999	486	8
2000	590	13
2001	678	13
2002	712	18
2003	798	21
2004	895	47
2005	957	55
2006	895	47

로 전체 변호사 수의 50%에 육박한다. 특히 세금(Tax), 건설, 기업 인수합병, 지적재산권, 해양 사건 등 특화된 사건을 주로 취급하는 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각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를 영입하여 이른바 백화점식 토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대형 로펌까지 그 규모와 법조시장 점유율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대형 로펌의 출현은 유학기회의 부여, 국제적 학술단체에의 참여 등으로 이른바 전문변호사를 배출하여 왔다. 따라서 법률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급격한 국내 로펌의 붕괴와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업송무와 같이 고도의 특화된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사건은 대형화 및 전문성이 강화된 로펌이 주로 취급하며, 전통적인 개인송무의 경우에는 여전히 개인변호사 또는 소형 법무법인이 주요 법률서비스 공급자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시장개방 이후 심화될 것이다.

III. 법률시장개방과 그 대응책

1. 한·미 FTA 중 법률시장개방에 관한 주요 내용

지난 2007년 4월 1일 체결된 한미 FTA에서 양국은 다음과 같이 5년에 걸친 단계적 법률시장 개방에 합의하였다.

첫째, FTA 협정 발효와 동시에 미국법, 미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 및 국제공법에 관한 미국 변호사의 법률자문과 미국 로펌의 국내분사무소 개설이 허용된다. 이에 관하여 지난 7월 18일 입법 예고된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3년 이상 법률전문가로 종사한 외국 변호사는 국내에서 외국법 자문사로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후 미국법에 관한 법률자문을 할 수 있다.

둘째,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는 미국 로펌의 국내 분사무소와 한국 로펌 간의 업무제휴가 가능하다. 이때 국내법 사무와 외국법 자문사무가 혼재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동수임, 수익분배가 허용될 예정이다.

셋째, 협정 발효 후 5년 내에는 완전 개방이 이루어져 미국 로펌과 국내 로펌 간 동업사업체 설립이 허용된다.

이러한 단계적 개방을 핵심으로 하는 협정내용은 이웃 일본의 법률시장개방 패턴과 유사하고, 일본은 성공적으로 법률시장을 개방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일본보다 10년 정도 늦게 개방하는 것이므로 국내의 법률시장이나 로펌이 이를 큰 부작용 없이 수용할 만한 여건은 이미 조성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2. 법률시장개방이 한국에 미칠 영향

법률시장개방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일반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함께 상당히 많은 일상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법조인양성제도의 새로운 틀로서의 로스쿨 도입과 맞물리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문제들이 속출할 수도 있다. 벌써부터 로스쿨 입학시험을 위한 입시학원의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하는 것은 자칫 변호사관련 시장을 과열로 몰고 갈 위험이 있다. 전통적으로 법조직역이 일반대중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온 만큼 미래의 변호사상을 과거와 동일시하여 과도한 사회적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오산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변호사들의 송무시장에서는 이미 시장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자격으로 평생을 먹고 사는 직업에서 사건이 떨어지면 정년이 되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이 일반 국민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법률시장의 개방은 미국 등지에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한국인 및 한국계 외국인의 국내 진입으로 변호사 숫자의 증가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특히 국내에 고객 기반을 갖춘 일부는 송무영역에서도 일정한 영향력을 갖출 것이다. 법률시장개방으로 예측되는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긍정적 측면

첫째, 법률시장의 개방은 고급 법률서비스 소비자인 기업의 수요를 확대시켜 기업법무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선진 외국 로펌의 시스템을 벤치메킹하여 국내 로펌문화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외국 로펌의 국내 진출 및 향후 국내 업계의 경쟁력 향상 정도에 따라 변호사시장의 새로운 공급원을 창출할 수 있다.

2) 부정적 측면

첫째, 규모·자금력·네트워크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외국 로펌에 국내 로펌이 종속될 우려가 있다.

둘째, 국내 변호사 및 사무직원 등의 고용시장에 불안정성이 초래될 수 있다.

셋째, 검증되지 않은 외국법 자문사(외국 변호사)의 활동으로 법률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

넷째, 변호사 업무를 비즈니스로 파악하는 외국 로펌의 고도 사업정서상 국내 법조고유의 문화와 윤리가 훼손될 수 있다.

3. 법률시장개방에 대한 대응책


첫째, 법률시장의 개방에 따른 극심한 상업화 추구로 인해 변호사의 공익성이 붕괴되지 않도록 변호사윤리장전 개정과 공정한 변호사 징계절차를 확립시켜 변호사윤리를 강화할 필요가 크다. 영국의 대표적 로펌인 클리포드 찬스(Clifford Chance)의 경우 외국 진출 시 적대적 M&A 및 공격적인 법률서비스 세일즈로 본토국의 법조윤리 및 법률문화를 초도화시킨다는 각국의 기존 예를 참고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주요 로펌의 대표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조계의 필요사항을 수시로 수렴한다. 협의체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은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에 전달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아 국가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보다 먼저 법률시장을 개방한 영·미의 선진 관리감독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개방 후 혼란을 겪은 독일, 프랑스, 대만, 싱가포르의 사례를 충분히 연구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변호사의 국제경쟁력과 전문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로스쿨을 졸업하면 바로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 있는 전문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다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 전문 변호사는 실제 사건을 처리해 나가면서 쌓인 경력과 노하우를 통하여 인정되는 것이지, 단순히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로스쿨을 졸업하였다 하여 IT에 관한 전문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을 직시하여 변호사 스스로 전문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세미나 등 공유의 장을 통한 변호사 간 활발한 정보교류를 통해 국내 변호사의 경쟁력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IV. 결론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법률시장은 급변하고 있다. 이는 비단 법률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세분화·전문화 물결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제 2007년 9월 로스쿨법의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 및 관계 기관 전체는 무엇이 진정 국익을 위한 것인가 하는 시각에서 그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며, 다가오는 법률시장개방에 맞추어 변호사 스스로도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변호사 개인뿐만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등의 주요 국가기관 역시 관련 기관과 긴밀한 접촉을 하며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변화는 언제나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동반한다. 그렇지만 알을 깨야만 새가 날갯짓을 할 수 있듯이 변호사 역시 변화하는 법률시장에서 스스로 다양한 직역을 개척하고 전문화하여야 높이 비상할 수 있을 것이다. 

소순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 법과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독일 본(Bonn)대학 법관 장기연수를 마치고,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제20회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제10기를 거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하였고,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국제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율촌에 재직 중이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조세신고납부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동산 소송과 조세문제, 조세법의 헌법적 조명, 조세와 헌법재판, 조세환급청구권과 그 소송구조에 관한 연구, 조세판계 20선, 조세소송 등 다수가 있다.